

광주지방법원 2017. 10. 25 선고 2017나1727(본소), 2017나1734(반소) 판결 [건물명도
등·건물매수청구 등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7. 10. 25 선고 2017나1727(본소), 2017나1734(반소)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2. 14 선고 2015가단9619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주식회사 B

피고, 항소인C

변론 종결 2017. 9. 13.

판결 선고 2017. 10. 25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2. 14. 선고 2015가단9619(본소),
2016가단11305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 및 피고가,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, 29,61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의 2016. 11. 22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순천시 D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주택 82.3㎡와 ㉡부분 조립식조 기타지붕 화장실 1.4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 83.7㎡를 인도하고, 2016. 12. 1.부터 위 토지 83.7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6,417,400원 및 그 중 44,744,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, 11,673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6,417,400원 및 그 중 44,744,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, 11,673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.항 제1행의 '테크플레이트'를 '데크플레이트'로, 제2의 가.1)항 제2~3행의 '위 부자의'를 '위 부지의'로,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'9,254,000원'을 '9,258,064원'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태웅

판사권혁재

판사김희주

별지